##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수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292

발의연월일: 2020. 7. 1.

발 의 자: 박수영・유경준・안병길

윤창현 • 이헌승 • 이주환

김은혜 · 김도읍 · 전봉민

황보승희 • 전주혜 • 서병수

의원(12인)

## 제안이유

현행법은 창업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제조업을 영 위하는 창업자에 대하여 사업 개시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각종 부담 금을 면제하고 있음.

그런데 우리나라 기업의 창업 5년 후 생존률은 29.2%(2017년 기준) 밖에 되지 않음. 이에 창업기업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창업 기업의 생존률을 높이기 위해 부담금 면제 범위 및 기한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.

## 주요내용

가. 농지보전부담금과 대체초지조성비를 면제받는 창업자를 현행 창업 후 5년 이내 사업계획을 승인받는 자에서 창업 후 7년 이내 사업계 획을 승인받는 자까지로 확대함(안 제39조의3제1항).

나. 제조업 창업 중소기업에 대하여 면제하고 있는 부담금을 현행 16 개에서 환경개선부담금을 추가하여 17개 부담금으로 하고, 면제 기 한을 현행 3년에서 7년으로 확대함(안 제39조의3제2항).

#### 법률 제 호

##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7년"을 "10년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3년"을 "7년"으로 하며, 같은 항에 제1 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7. 「환경개선비용 부담법」 제9조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부담금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) ① 제3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사업을 개시하여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. 다만, 이 법 시행 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 의무가 발생한 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
② 제39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사업을 개시하여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. 다만, 이 법 시행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 의무가 발생한 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9조의3(부담금의 면제) ① 제3	제39조의3(부담금의 면제) ①
3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	
받은 창업자에 대하여는 사업	
을 개시한 날부터 <u>7년</u> 동안 다	<u>10년</u>
음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한다.	
1. • 2. (생 략)	1.•2. (현행과 같음)
② 「통계법」 제22조제1항에	②
따라 통계청장이 작성·고시하	
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	
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중소기	
업을 창업하는 자에 대하여 사	
업을 개시한 날부터 <u>3년</u> 동안	<u>7년</u>
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한	
다.	
1. ~ 16. (생 략)	1. ~ 16.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17. 「환경개선비용 부담법」
	제9조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